



브뤼셀, XXX

[...](2024) XXX 초안

위원회 이행 규정(EU) .../...

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(EU) No 2023/1542에 따라 배터리에 대한 탄소 발자국 선언 형식 규정 (EEA 관련 문서)

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

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고려하고,

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2023년 7월 12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(EU) 2023/1542와 관련하여 지침 2008/98/EC 및 규정(EU) 2019/1020을 개정하고 지침 2006/66/EC¹⁾, 특히 제7조 제1항의 네 번째 하위 단락 (b)항을 폐지한다.

전문:

- (1) 규정(EU) 2023/1542 및 특히 제7조 제1항은 특정 범주의 배터리가 연합 시장에 출시될 때 탄소 발자국 선언을 수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.
- (2) 규정(EU) 2023/1542의 제7조 제1항은 탄소이력 선언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정보 목록을 제공한다. 이 목록은 선언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범주의 배터리에 적용된다.
- (3) 위원회는 이행 행위를 통해 탄소 발자국 선언의 형식을 정해야 한다. 탄소 발자국 선언 이행의 일관된 조건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려면 규정(EU) 2023/1542의 제7조 제1항에 포함된 모든 범주의 배터리 선언에 대한 단일 형식을 설정해야 한다.
- (4) 이 규정에 제공된 조치는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8/98/EC의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²⁾.

본 규정을 채택한다:

제1조

규정(EU) 2023/1542 제7조 제1항의 첫 번째 하위 단락에 언급된 배터리에 대한 탄소 발자국 선언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형식은 이 규정의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.

제2조

1) OJ L 191, 28.7.2023, p. 1, ELI: <http://data.europa.eu/eli/reg/2023/1542/oj>.

2) 2008년 11월 19일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의 폐기물 및 특정 지침 폐지에 관한 지침 2008/98/EC(OJ L 312, 22.11.2008, p. 3, ELI: <http://data.europa.eu/eli/dir/2008/98/oj>).

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 고시일로부터 20일째에 발효된다.

본 규정은 그 자체가 완전한 구속력이 있고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.

집행위원회

위원장

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